

수신 수신처 참조
(경유)

제목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

1. 관련
 - 가.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
 - 나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제27조의5까지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&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 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,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, 기존 '제재조치 매뉴얼'의 명칭을 '제재조치 가이드라인'으로 변경하고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오니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

붙임 : 181219_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가이드라인(2018.12). 끝.

수신자 본부(각 과) 외 3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

행정사무관 기안12/19 연구제도혁신 전결12/19
정재현 과장 이재훈

협조자

시행 연구제도혁신과-1802 (2018-12-19) 접수 18121918 (2018-12-19)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(중앙동) 301호 / <http://www.msit.go.kr>

전화번호 02-2110-1681 팩스번호 02-2110-0262 / jsyall@msit.go.kr / 공개